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지식재산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등)의 전체 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자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 게재 원칙을 전체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 시행령 일부 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

1) 현행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해당 자연인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전체 주소가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음.

-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산으로 공보에 게재된 개인주소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가

- 공보에 공개된 자연인 전체주소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접촉 및 인재 유출 시도 증가 등 기술유출 위험 우려

-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 확대 요구 증가

- 부분주소 게재 비율: '21년 1.5% → '25년 9.9%로 지속 증가
 - 부분주소 게재 찬성 비율: 92%^(24년)로 개인정보 보호 요구 확대
 - 현행 전체주소 원칙하에서 신청 시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변경신청 발생 및 행정 비효율 초래
- 2) 현행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변경함
- 3) 특허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출원인의 행정적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부분주소 게재 비율이 '21년 1.5%에서 '25년 9.9%로 증가하는 등 제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허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을 부분주소로 변경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19조)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출원인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신청에 따른 행정적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허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를 원칙으로 게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를 “그 주소의 일부를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특허공보) ① ~ ③ (생략)	제19조(특허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u>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단서 신설></u>	④ ----- ----- ----- ----- ----- <u>그 주소의 일부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다.</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연 락 처	(042) 481 - 3570